

[별표 4] <개정 2013.8.6>

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(제4조제4항 관련)

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압력조정기(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)
2.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
3. 정압기용필터(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)
4. 매물형정압기
5. 호스
6. 배관용 밸브(볼밸브와 글로우브밸브만을 말한다)
7. 콕(퓨즈콕·상자콕 및 주물연소기용노즐콕만을 말한다)
8. 배관이음관
9. 강제혼합식가스버너(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)
10. 연소기[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.6 kW(20만 kcal/h) 이하인 것만을 말하되,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]
11.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(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12. 로딩암
13. 연료전지[가스소비량이 232.6 kW(20만 kcal/h)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. 이하 같다]
14. 다기능보일러[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.6kW(20만 kcal/h)이하인 것을 말한다]